



경기서남권지사



수신 도시기반시설본부장

(경유)

제목 2020년도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및 납부안내

1.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, 국유재산 사용료 고지 관련입니다.
 2. 「국유재산법」 제32조(사용료) 및 제33조(사용료의조정)에 따라, 귀 공사에서 허가를 득하신 국유재산에 대한 2020년도분 국유재산 사용료를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.
 - 가. 부과대상/목적 : 광명시 소하동 644-15외 7필지(747.0㎡) / 강남순환도로 접속도로개설
 - 나. 사 용 료 : 3,728,460원(V.A.T포함)
 - 다. 산정기간 : 2020.01.01.~2020.12.31.(1년)
 - 라. 납부기한 : 2019.12.27.(금)까지
 - 마. 납부계좌 : 국민은행 462890-14-704410 (예금주:한국수자원공사)
 3. 기한 내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되며, 사용료가 체납될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사오니, 반드시 납부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붙 임 : 고지서 및 사용료 납부관련 안내사항 각 1부. 끝.

경기서남권지사장



★고객지원 담당 **고경아** 고객지원 차장 **엄기철** 관리부 부장 **김용환** 경기서남권지사12/05 지사장 **최기선**

협조자

시행 경기서남권지사-5717 (2019.12.05.) 접수 토목부-22505 (2019.12.5.)
 우 물관리 일원화, 국민과 함께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 / http://www.kwater.or.kr/
 전화 02-2150-0515 /전송 02-2150-0590 / kw0901@kwater.or.kr / 비공개(6,7)
 여기겠습니다.

일련번호 300118432019112816802

고지번호 : 2019-00002343

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고지서

귀하의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알려드리니,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기한내 미납부시 국유재산법에 따라 연체료가 가산됩니다.)

1. 사용인 성명 :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

2. 납부할 금액 : 3,728,460원

사용료(공급가액)	부가세	합계
3,389,510	338,950	3,728,460

3. 납부계좌

은행명	계좌번호	예금주
국민은행	462890-14-704410	한국수자원공사

4. 납부기한 : 2019. 12.27 까지

5. 사용 국유재산의 표시

소재지	사용면적 (㎡)	재산가액 (원/㎡)	사용료율	사용료 산정기간		사용료 산정 (부가세별도)	납부 금액 (부가세별도)
				시작일	종료일		
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643-5	5	181,500	25/1000	2020-01-01	2020-12-31	22,687	22,687
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644-10	97	181,500	25/1000	2020-01-01	2020-12-31	440,137	440,137
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644-11	193	181,500	25/1000	2020-01-01	2020-12-31	875,737	875,737
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645-7	12	181,500	25/1000	2020-01-01	2020-12-31	54,450	54,450
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644-16	243	181,500	25/1000	2020-01-01	2020-12-31	1,102,612	1,102,612
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645-4	46	181,500	25/1000	2020-01-01	2020-12-31	208,725	208,725
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645-6	46	181,500	25/1000	2020-01-01	2020-12-31	208,725	208,725
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644-15	105	181,500	25/1000	2020-01-01	2020-12-31	476,437	476,437

□ 세금계산서 발행

- 사용료를 선(先)납부시 ☞ 세금계산서(영수) 전자 발행(예정)

* 사용목적이 "경작" 인 경우 면세이므로 "계산서" 발행

- 사용료 납부 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

☞ 아래의 연락처로 청구용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

담당자성함, E-메일 주소 및 사업자등록증(사본) 제출
kw0901@kwater.or.kr 또는 (FAX) 02-2150-0590/042-629-4848
문의전화 : 02-2150-0515(고경아 대리)

□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

- 해당 토지의 재산가액(개별공시지가 등) 기준 사용료를 적용 산정
- 전년도 대비(1년 기준) 사용료가 9% 이상(경작인 경우는 5%) 증가한 경우
☞ 전년도 사용료(1년 기준)의 109%(경작인 경우는 105%)를 상한으로 조정

단, 사용기간 만료 후 갱신하는 경우, 조정하지 않고 전액 부과

※ 「국유재산법」 제32조(사용료) 및 제33조(사용료의 조정),

동법 시행령 제29조(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), 제31조(사용료의 조정)

□ 국유재산 사용을 종료(취소)할 경우

- 진출입 목적 토지 매각, 시설물 철거 등으로 더 이상 국유재산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만료 2달 전 취소신청서 제출
☞ K-water 직원 입회하에 수도용지 원상회복(사용 종료) 확인 후 취소 승인